

공급사 평가관리 지침

제정 2013. 9. 1

개정 2015. 9.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의 교육/연구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한 소싱그룹 선정과 계약체결 공급사의 성과분석에 대한 운영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급사 선정과 계약체결 공급사의 성과분석업무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다른 대학의 제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싱그룹(Sourcing Group, 이하 “SG” 라 한다) “이라 함은 대학이 최적구매를 위해 공급시장, 물품특성 및 계약의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전문 분야별로 공급사를 설정한 구매그룹을 말한다.
2. “SG 공급사” 라 함은 구매계약을 위한 협상 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정의 절차를 거쳐 SG에 등록된 공급사를 말한다.
3. “공급사 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 “이라 함은 공급사관계관리를 위한 공급사의 성과분석과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4. “성과분석” 이라 함은 납품실적 및 사용자의 평가자료 등의 정보를 기준으로 공급사를 우수, 양호, 불량 등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9.1)
5. “공급사 평가관리부서” 라 함은 공급사의 부정 및 비윤리 행위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수행하는 구매총괄부서를 말한다.
6. “SG운영부서” 라 함은 SG생성, SG공급사 모집, 평가, 퇴출 등을 수행하는 구매총괄부서를 말한다.
7. “성과분석부서” 라 함은 4호의 공급사 성과분석을 실시하는 구매총괄부서를 말한다.
8. “우수공급사” 라 함은 4호의 성과분석결과 우수평가를 받은 공급사를 말한다.

제2장 조직 및 책임과 권한

제4조(조직 및 책임과 권한) SG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사용, 생성, 삭제, 공급사 모집 및 퇴출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운영기준	운영담당
SG 사용	SG은 통합 POSBID 시스템에 등록하여 대학, 포스코, RIST 공동사용	구매총괄 부서
SG 생성,삭제	SG 운영부서장	
SG 공급사 모집	정기모집 : 매년 2분기 실시 수시모집 : SG 보충 필요시 실시	
SG 공급사 퇴출	정기퇴출 : 정기 평가결과 불량에 해당 수시퇴출 : 계약불이행 및 부정당 행위 발생시에 해당	

제3장 업무절차

제5조(공급사의 등록 신청) 공급사의 등록신청은 다음 각 호의 절차와 기준에 따른다.

1. SG 등록대상 공급사는 해당 품목의 엔지니어링사, 장치제작사, 독점공급사(독점대리점 등)를 원칙으로 한다.
2. 거래를 희망하는 공급사는 대학이 지정하는 전산시스템에서 해당 SG을 확인하고,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3. SG 운영부서는 공급사의 신규 등록신청서를 접수하고, 모집 마감일로부터 3 근무일 이내에 등록 및 인증서 등록여부를 판정하거나, 평가계획, 진행상황 등을 답신하여야 한다.
4. 공급사 모집 및 등록신청은 대학이 지정한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자격, 절차를 공지하여야 하며 등록기간은 30일 이상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공급사 평가) 공급사 평가는 SG 신규 등록심사와 SG에 등록된 공급사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 분석으로 구분한다.

제7조(신규 등록심사) SG 신규 등록심사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심사방법은 서류심사와 실태조사로 구분하며, 서류심사에 합격한 공급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이하 “심사”라 한다)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대상은 등록을 신청한 공급사 또는 SG 운영부서장이 신규 공급사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급사를 대상으로 한다.
3. 심사주관은 SG 운영부서에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 기술부서 등을 포함한 Task Force팀을 구성할 수 있다.
4. 심사주기는 경쟁미흡 등 추가 SG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매년 2분기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 필요시에는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5. SG 등록대상 공급사 및 심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SG 등록대상 공급사는 대학이 인정하는 신용평가 기관의 유효한 신용등급이 B급 이상 또는 동등수준의 평가기관에서 발행하는 동등 수준의 등급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나. SG 등록대상 공급사는 해당품목의 엔지니어링사, 장치제작사, 독점공급사(독점 대리점 등)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품목의 공장등록이 되어있거나 타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물품을 제조하는 공급사는 임차계약을 공증필해야 한다. 단, 해당품목의 대리점은 예외로 한다.

다. 등록대상 공급사는 SG 특성에 따라 엔지니어링사, 장치제작사, 독점공급사(독점대리점 등)로 나누고 심사기준 및 배점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연구장치		연구기기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기술력	설계능력	30	공급능력	30
	제작능력	30		
	품질관리능력	10	품질관리능력	20
사업실적	제품의 전문성	10	제품의 전문성	20
	납품실적	10	납품실적	20
신용도	신용등급	10	신용등급	10

- (1) 등록심사의 만점은 100점으로 하되 SG의 특성별로 가감요소를 정해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 (2) (1)에 의거하여 특별심사항목을 운영키로 한 SG 운영부서장은 심사전에 심사항목, 배점기준 등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 (3) 전문기술품목 등 상기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진행이 어려운 연구장비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6. 합격판정 기준은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결과가 80점 이상인 공급사를 합격으로 인정하며, 해당 SG에 신규 등록 한다.

7.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SG 운영부서장이 판단하여 서류심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관련서류와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하고 기준 이상인 경우 즉시 등록하고 전자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나. SG 운영부서장은 심사할 대상 SG, 대상공급사, 심사자, 심사일정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급사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 공급사 방문전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로 방문일정을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SG 운영부서장은 심사가 종료되는 즉시 불합격 공급사의 불합격 사유를 포함한 심사결과를 해당 공급사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마. 불합격 공급사에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바. 심사결과 합격한 공급사에게는 입찰대상 공급사로 등록하고 전자 인증서를 발급한다.

사. SG 운영부서장은 등록심사결과를 대학 POSBID 시스템에 저장하여 그 이력을 관리 하여야한다.

8. SG 운영부서장은 심사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공급사로부터 심사기간 중에 접수하여야 한다

가. SG등록 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다. 공장등록증명원 (제조업체로 정할 경우) 1부

라.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9. SG에 등록된 공급사의 설비 및 제작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신규 공급사 평가 기준에 의거 해당공급사를 재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신규공급사 합격판정기준 미달시 SG에서 제외한다.

제8조(성과분석) 성과분석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실시한다.

1. 성과분석은 대학을 대상으로 납품하는 공급사의 연간 납품 실적을 대상으로 연간 성과분석을 실시하며, 별도로 부정행위에 관한 기준을 운영한다.(개정: 2015.9.1)

2. 성과분석 주관은 공급사 성과분석시스템을 운영하는 성과분석부서장이 실시한다.

3. 성과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공급사 성과분석 절차는 전자적인 형태로 유지, 관리한다.

나. 성과분석부서장은 불량 판정을 받은 공급사에게 개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5근무일 이내 승인 또는 반려판정을 받도록 한다. 반려인 경우 동 절차를 반복한다.

다. 공급사는 성과분석 결과에 대하여 결과가 게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SG 운영부서장은 5 근무일 이내 확인절차를 거쳐 분석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4. SG별 분기 및 연간성과분석 기준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운영하며, 세부기준은 전자적 형태로 유지, 관리한다.

가. 연간평가의 평가대상기간은 전년도 3월1일부터 당해 연도 2월28일까지로 한다.

나. 성과분석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신용도(Credit), 품질(Quality), 가격(Cost), 납기(Delivery), 협조도(Collaboration), 환경/안전관리(Environment & Safety)

다. 항목 및 배점은 SG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라. 항목은 세부항목 및 배점을 가진다.

마. 세부항목은 100점 환산을 위한 등급기준을 가진다.

바. 배점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그룹	항목	배점
신용도	신용등급	15
품질	기술자 수행실적	-
	하자관리	20
	사용자 만족도	25
납기	납기관리	20
가격	입찰관리	10
협조도	자료제출 협조도	10
가점(Max. +10점)	환경/안전관리 충족	4
	도면작성 참여여부	2
	정부과제 수행여부	2
	연구소 보유여부	2
	공동연구 수행여부	2
	기술이전 수탁여부	2
감점(Max.-10점)	민원야기문제	-10

5. 성과분석 결과의 활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성과분석 결과 우수에 속하는 공급사에게는 소정의 우대를 할 수 있다.

나. 성과분석 결과 불량에 속하는 SG의 공급사에게는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공급사에게 개선에 대한 합의서를 요청해야 한다.

다. 성과분석 결과 불량으로 평가받은 공급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다만, 거래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거래의 중지가 해당 물품의 수급곤란, 품질저하 등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협상/입찰참여의 제한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간 평가 Poor 등급 1회 : 6개월 협상/입찰참가제한

(2) 연간 평가 Poor 등급 연속 2회 : SG그룹 등록취소 1년

라. 성과분석부서장은 ‘다’ 목에서 최종 거래중지로 판정한 경우 그 내용을 즉시 관련 교내 공지, 포스코, RIST 및 해당 공급사에 통지한다.

마. 성과분석부서장은 ‘다’ 목에서 성과분석 열위업체로 최종 거래중지로 판정한 경우는 그룹사 공동으로 제재를 실시한다.

바. 최근 2년 동안 계약실적이 없는 공급사는 해당 SG에서 제외한다. 단, 경쟁구매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6. 계약불이행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불이행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단, 거래제한 대상 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거래제한 기한은 가감될 수 있으며, 별표1에 나열되지 않은 계약불이행, 부정행위로도 거래제한 될 수 있다. (개정: 2015.9.1)

나. 별표1 등에서 정하는 계약불이행 또는 부정행위를 한 공급사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건을 해지할 수 있고, 거래제한이 결정된 공급사에 대하여는 대학과의 모든 거래 자격을 제재기간 동안 제한하며, 동 공급사가 제재기간 종료 후 종전에 등록되어 있던 SG에 대해 재등록 요청시에는 공급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신규 공급사 평가기준에 의거 합격시 해당 SG에 등록한다. 단, SG 운영부서 심의결과 제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재기간 종료 후 SG 자격을 재부여한다. (개정: 2015.9.1)

다. 계약불이행 및 부정행위의 공급사는 임원 및 임원의 특수 관계인 등 사실상 동일인(법인 포함)이 운영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5.9.1)

라. 매도인이 별표1 등에서 정하는 계약불이행 및 부정행위를 한 공급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때에는 매수인은 그 매도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매도인이 시정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별표1 등에서 정하는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9.1)

마. 계약불이행 및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공급사에게 제재기간 중 또는 제재기간 종료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계약불이행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기간을 별표1 등에서 정한 기한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9.1)

바. 부정공급사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행한 경우 가장 무거운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거래제한 기한을 가중할 수 있으며,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거래제한 기한을 정한다. (개정: 2015.9.1)

사. 계약불이행 및 부정당행위 공급사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는 경우, 제재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성 여부 및 해당 공급사의 대학에 대한 기여정도 등 대학의 교육/연구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재기한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9.1)

아. 대학의 윤리특별약관 및 관련약관에서 규정한 비윤리행위 혹은 부정행위로 인해 모든 거래자격이 제한된 공급사의 경우, 포스코 또는 포스코가 출자한 법인과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및 학교법인 포스코 교육재단 이 출자한 법인의

공급사 평가시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 (개정: 2015.9.1)

자. 포스코 또는 포스코가 출자한 법인과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및 학교법인 포스코 교육재단 이 출자한 법인에서 제재한 공급사의 경우, 대학의 공급사 평가시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9.1)

부 칙

이 지침은 2013년 9월 1일부 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5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1)

계약불이행 및 부정당행위 제재기준

구분	제 재 사 유	제재기간
계 약 불 이 행	○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년
	○ 계약자의 부도 또는 폐업으로 정상적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2년
	○ 불합격품에 대한 대체납품 요구에 불응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 30일 이상 지체건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1년
	○ 낙찰 후 고의성은 없으나, 사양확인 등의 과실로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자(단순 오투찰은 제외)	6개월
	○ 계약체결 후 소재수급 곤란 등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
	○ 계약의 이행 또는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로 대학내에서 재해를 발생 시킨 자	
	- 아래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1년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 일반(치료기간 4일 이상)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6개월	
- 경미(치료기간 4일 미만)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3개월	
부 정 당 행 위	○ 고의적으로 품질이 낮은 자재를 납품하거나 수량을 속여 납품한 경우	2년
	○ 정당한 이유없이 대학 자산을 무단반출한 경우	2년
	○ 악의성 투서나 유언비어를 유포한 경우	2년
	○ 부당하도급을 한 경우	
	- 1차 위반	3개월
	- 2차 위반	2년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입찰 담합을 주도한 경우	3년
	- 입찰 담합에 단순 가담한 경우	1년
	○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
	○ 타사의 계약에 상호를 빌려준 경우	6개월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 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년
	○ 매수인의입찰,협상,검수등업무수행을방해하거나기타계약이행	1년
	○ 소액구매 운영기준 3회 이상 위반시(누적관리)	3개월
	○ 부정당공급사로부터물품을구매,납품하여시정권고를받은후 시정권고내용을 불이행한 경우	1년
	○ 비윤리행위(윤리특별약관 제4조)시	
	- 1백만원 이상의 금전,금품을 제공한 경우	5년
- 1백만원 미만의 금전,금품을 제공한 경우	3년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접대,편의를 제공한 경우	1년	

(별첨1)

연구장비 등록심사 기준

<연구장치>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설계 능력 (43%)	기술력 (60%)	1) 해당 품목에 대한 Basic Engineering 또는 Basic Design 실적보유 2) 해당 품목에 대한 Detail Design 실적보유 3) 해당 품목에 대한 Detail Design 실적(설계외주업체활용) 보유 4) 해당사항 없음	100점 90점 80점 50점	
	설계조직 (40%)	1) 자체설계를 할 수 있는 별도조직(5인 이상) 보유 2) 자체설계를 할 수 있는 별도조직(2인 이상) 보유 3) 자체설계는 못하나 설계관리조직(2인 이상)이 있는 경우 4) 설계관리를 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는 경우 5) 해당사항 없음	100점 90점 80점 70점 50점	
기술 능력 (70%)	보유설비 (30%)	1) 해당품목 전공정의 제작설비를 보유하고 있음 2) 해당품목 주요공정의 제작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3) 해당품목 주요공정의 일부 제작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4) 해당품목 주요공정의 제작시설 대부분을 미보유하고 있음 5) 해당품목 주요공정을 외주에 의존	100점 90점 80점 70점 50점	
	제작 능력 (43%)	기술인정 및 규격 (20%)	1) 해당품목에 대한 아래의 인증 또는 규격을 보유 - ISO, IES,KS,JIS,DIN,ASME,UL,API 등 기술인증 2) 사내 품질관리 표준서와 지침서를 보유하고 있음 3) 사내 품질관리 표준서 또는 지침서를 보유하고 있음 3) 해당사항 없음	100점 90점 80점 50점
		기술인증 보유 (20%)	1) 해당SG 특허보유 2) 해당SG 실용실안 3) 해당SG 의장등록 4) 해당사항 없음	100점 80점 70점 50점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실적 (15%)	해당 SG에 있어서 1) 해외기술제휴 실적과 학계(연구기관)공동연구실적을 동시 보유 2) 해외기술제휴 실적 또는 학계(연구기관)공동연구 실적을 보유 3) 해외기술제휴 실적 또는 학계(연구기관)공동연구 실적이 없음	100점 80점 50점	
	기술자 보유 (15%)	1) 상시고용직원의 기술(기능)자격보유 비율이 30%이상 2) 상기고용직원의 기술(기능)자격보유 비율이 15%이상 3) 상기고용직원의 기술(기능)자격보유 비율이 15%미만	100점 80점 5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품질관리 능력 (14%)	<p>품질수준 (35%)</p> <p>1) Q.C 조직 및 인원이 별도로 있음 2) Q.C 요원이 별도로 있으며 자체 검사기준서 등으로 관리하고 있음 3) Q.C 조직은 별도로 없으나 담당자를 임명하여 활동하고 있음 4) Q.C 관련인원, 제도 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함</p>	100점 90점 80점 50점
		<p>국제품질 및 국가규격 인증 (35%)</p> <p>국제품질 및 국가 규격인증 1) 획득후 5년 이상 2) 획득후 3년 이상 3) 획득후 1년 이상 4) 획득후 1년 미만 5) 해당사항 없음</p>	100점 90점 80점 70점 50점
		<p>검사설비 (30%)</p> <p>1) 대상 SG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및 시험시설이 전부 갖추어져 있으며 기록유지가 잘됨 2) 대상 SG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및 시험시설이 50%이상 갖추어져 있으며 기록유지가 잘됨 3) 대상 SG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및 시험시설이 50% 미만임 4) 대상 SG 검사항목에 대한 측정 공구류만 있음</p>	100점 90점 80점 50점
사업 실적 (20%)	<p>제품 전문성 (50%)</p> <p>주력정도 (100%)</p> <p>1) 전년도 대상품목의 총매출액 점유율이 50% 이상 2) 전년도 대상품목의 총매출액 점유율이 30% 이상 3) 전년도 대상품목의 총매출액 점유율이 10% 이상 4) 전년도 대상품목의 총매출액 점유율이 10% 미만</p>	100점 90점 80점 70점	
	<p>납품 실적 (50%)</p> <p>납품금액 (100%)</p> <p>1) 해당품목을 대학,포스코그룹,기타기관에 연간(10)억 이상 납품 2) 해당품목을 대학,포스코그룹,기타기관에 연간(10)억 미만 납품 3) 해당품목을 대학,포스코그룹,기타기관에 연간(7)억 미만 납품 4) 해당품목을 대학,포스코그룹,기타기관에 연간(5)억 미만 납품 5) 해당품목을 대학,포스코그룹,기타기관에 연간(3)억 미만 납품</p>	100점 90점 80점 70점 50점	
신용도 (10%)	<p>신용등급 내/외자 (100%)</p> <p>1) AAA, AA, A 혹은 이에 상응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등급 2) BBB, BB 혹은 이에 상응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등급 3) B 혹은 이에 상응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등급</p>	100점 90점 8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가 감 점	가점 (+Max.10점)	1) 환경친화성 및 안전관리(최대 7점까지 인정) - 환경관리 ISO 14001 인증 보유, 해당품목의 정부공인 친환경 경상품 제조, 환경친화기업 지정 - 환경보고서발간, 환경관리회계 실시, 녹색구매 실시 - AEO인증획득 공급사 - 수출입 안전관리 질의서 평가결과 80%이상 충족 공급사 2) 정부과제 수행 실적 3) 연구소 보유 업체 4) 공동연구 수행 실적 5) 기술이전 수탁 실적	(각2) (각2) (각2) (각2) 2 2 2 2
	감점 (-Max.10점)	1) 민원 야기업체	-10

<연구기기>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기술 능력 (50%)	공급 능력 (60%)	공급자격 (90%)	1) 해당품목 전공정의 제작설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국내공급자 또는 국내총판	100점
			2) 해당품목 주요공정의 제작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국내공급 광역대리점	90점
			3) 해당품목 주요공정의 일부 제작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국내 공급 지역대리점	80점
			4) 해당품목 주요공정의 제작시설 대부분을 미보유하고 있거나, 국내공급 협약업체	70점
			5) 해당품목 주요공정을 외주에 의존 하거나, 대리납품 업체	60점
	기술인증 / 규격보유 (3%)	기술자 보유 (3%)	1) 관련 또는 유사분야 기사 1,2급 이상 자격자를 3인 이상 보유 또는 본사 기술지원 가능	100점
			2) 관련 또는 유사분야 기사 1,2급 이상 자격자를 1인 이상 보유 또는 자체 기술지원 가능	90점
			3) 관련 또는 유사분야 기능사를 3인 이상 보유 또는 자체 순회 점검 인원 3인 이상 보유	80점
			4) 관련 또는 유사분야 기능사를 3인 미만 또는 자체 순회점검 인원 3인 미만 보유	70점
	특허/ 제휴 (4%)	기술인증 / 규격보유 (3%)	1) 해당품목에 대한 아래의 인증 또는 규격을 보유(대리점 경우 본사포함) * ISO, IES,KS,JIS,DIN,ASME,UL,API 등 기술인증	100점
2) 사내 품질관리 표준서와 지침서를 보유하고 있음 (대리점 경우 본사포함)			90점	
조직 및인원 (50%)	품질 관리 (40%)	3) 사내 품질관리 표준서 또는 지침서를 보유하고 있음	80점	
		3) 해당사항 없음	50점	
		1) 관련분야 특허 및 실용신안, 또는 기술 제휴가 있음 (대리점 경우 본사포함)	100점	
		2) 관련분야 특허 및 실용신안, 또는 기술 제휴가 없음 (대리점 경우 본사포함)	50점	
품질 관리 (40%)	품질관리 활동 (50%)	1) QC 조직 및 인원이 상시적으로 운영 또는 A/S 조직 및 인력 운영	100점	
		2) QC 조직은 없고 인원만 별도로 운영 또는 A/S 조직없고 인력만 운영	90점	
		3) 필요시에만 QC 담당자를 선정운영 또는 필요시에만 A/S 조직 운영	80점	
		4) 해당사항 없음	50점	
		1) 공정별 검사가 시행되며 이력관리가 양호, 품질관리 활동 조직 및 인력운영	100점	
		2) 공정별 검사가 시행되나 이력관리가 미흡, 품질관리 활동 조직없고 및 인력만 운영	90점	
		3) 공정별 검사가 시행되지 않고 이력관리가 미흡, 품질관리 활동 조직없고 및 인력운영미흡	80점	
		4) 해당사항 없음	5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 실적 (40%)	제품 전문성 (50%)	주력정도 (100%) 1) 해당품목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임 2) 해당품목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임 3) 해당품목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 이상임 4) 해당품목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 미만임	100점 90점 80점 70점
	납품 실적 (50%)	납품금액 (50%) 1) 해당품목을 대학,포스코그룹,기타기관에 연간(10)억 이상 납품 2) 해당품목을 대학,포스코그룹,기타기관에 연간(10)억 미만 납품 3) 해당품목을 대학,포스코그룹,기타기관에 연간(7)억 미만 납품 4) 해당품목을 대학,포스코그룹,기타기관에 연간(5)억 미만 납품 5) 해당품목을 대학,포스코그룹,기타기관에 연간(3)억 미만 납품	100점 90점 80점 70점 50점
		납품기간 (50%) 1) 해당품목을 대학,포스코그룹,기타기관에 3년이상 연속으로 납품 2) 해당품목을 대학,포스코그룹,기타기관에 1년이상 납품 3) 상기사항에 해당사항 없음	100점 80점 50점
신용도 (10%)	신용등급 (100%)	1) AAA, AA, A 혹은 이에 상응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등급 2) BBB, BB 혹은 이에 상응하는 외국신용평가기관의 등급 3) B 혹은 이에 상응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등급	100점 90점 80점
가 감 점	가점 (+Max.10점)	환경친화성 및 안전관리(최대 7점까지 인정) - 환경관리 ISO 14001 인증 보유, 해당품목의 정부공인 친환경 경상품 제조, 환경친화기업 지정 - 환경보고서 발간, 환경관리회계 실시, 녹색구매 실시 - AEO인증획득 공급사 - 수출입 안전관리 질의서 평가결과 80%이상 충족 공급사 2) 정부과제 수행 실적 3) 연구소 보유 업체 4) 공동연구 수행 실적 5) 기술이전 수탁 실적	(각2) (각2) (각2) (각2) 2 2 2 2
	감점 (-Max.10점)	1)민원 야기업체	-10

(별첨2)

Sourcing Group 등록신청서

등록신청 S/G (2개 분야 이상 신청시 별도 작성)		신용등급	*증빙서류 첨부
		공장등록증	*증빙서류 첨부

일반현황	상호	
	대표자	
	설립일	
	소재지	
	종업원수	
	주업종	

재무현황	신용등급	
	자본	백만원
	부채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순이익	백만원

납품실적 등록신청 S/G	합계	백만원
	POSTECH	백만원
	POSTECH 그룹	백만원
	연구기관	백만원
	기타기관	백만원

기술보유 현황	인원	기사	명	
		기술자	명	
	기술인증 (ISO, KS, 특허 등)			
	환경/안전 인증			

설비/검사 장비보유현황	주요생산설비	
	주요 검사장비	
기타 사항	- 국산화 실적, 유망중소기업 지정, 전문면허 등	

등록신청	등록 신청일			
	등록 신청자	대표자	(인)인감날인	
	업무 담당자	전화:	휴대폰:	e-mail

※ S/G 등록신청 분야: 모델장치, 기열·용해, 진공장치, Lab기계장비, Lab분석장비, 전기장비, 광학장비, 계측장비, 장비제어, 소프트웨어

※ S/G 등록신청 서류: S/G 등록신청서 1부, 신용등급 평가서 1부, 공장등록증 또는 독점공급대리점 1부, 납품실적증명자료, 사업자등록증, 기술보유현황자료, 인감증명서 1부(신청서 날인 인감 필요시 사용인감계), 설비/검사 장비보유 대장, 전문면허 등 기타 평가에 반영자료 일체 제출 (제출처: 000, 000@postech.ac.kr, 우편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81번지 구매혁신FI)